

선임동의 요청서(보험회사 제출용)

수임인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위임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를 요청합니다.

1. 보험계약 및 사고 정보

피보험자	장사용	생년월일	630227
상품명			
사고번호		증권번호	

2. 사고 정보 및 치료내역

병원·과목	강남유로비뇨	기간	
치료이유	전립선 비대증		

3. 체결 혹은 체결예정 손해사정위임계약

위임인	장사용	생년월일	630227	관계	본인
-----	-----	------	--------	----	----

4. 선임 혹은 선임예정 손해사정업체

업체명	손해사정 도무	업등록번호	BD00002978
영위종목	신체		
담당 손해사정사	김도무	연락처	010-8054-0925
담당 보조인		연락처	
형사처벌 이력 ¹⁾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감목기관 제재이력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이수	최근 2년 내 1 회 20 시간		

5. 동의 수령방법

위임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SMS <input type="checkbox"/> 전화	(연락처) 010-3565-0827
수임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SMS <input type="checkbox"/> 전화	(연락처) 010-8054-0925

※ 제출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수임인의 손해사정업/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1) 최근 5년 내 보험업법 위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 위반에 한 함

(청구권자 ↔ 손해사정사 양식)

손해사정업무 및 보험금 사정업무 위임계약서 (손해사정사 선임권제도)

○ 위임인 ("갑") : 장사용

○ 수임인 ("을") : 손해사정 도무

"갑"과 "을"은 아래 대상사건의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1호를 활용한 실손의료비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대 상 사 건

보험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고내용(병명)	전립선 비대증
진료 병원	
치료시작일	

다 음

제 1 조 (업무의 위임내용) "갑"은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또는 보험금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의견 진술

제 2 조 (동의요청)

- ① "을"은 20 년 월 일까지 대상사건 기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갑"을 대리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별첨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직접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요청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을”은 제1항에 대한 보험회사의 회신을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손해사정에 착수할 수 없다. 보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3조(업무의 수행)

-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손해사정 진행과정 및 결과에 관하여 언제든지 “을”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을”은 손해사정업무 완료 시 손해사정서를 “갑”과 보험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보정요청이 있어 보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보수)

- ① “을”은 손해사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어 “갑”이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면책 처리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보수를 청구함에 이의하지 않는다.
- ③ “을”은 이 계약에 관하여 제1항의 보수 외에 어떠한 보수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 ④ “을”이 손해사정에 착수한 이후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위약금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공 및 협조)

- ① “갑”은 “을”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갑”은 허위의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수임인의 지위) “을”은 손해사정사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은 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다.

1. 제2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2. 보험회사가 이미 손해사정에 착수한 경우 (타당한 경우에 한함)

제8조(계약의 해지)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고 보수에 이의가 없음에도 즉시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을”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위탁업체 :손해사정 도무 _____ (이하 “당사” 라 한다)는 (주)메리츠화재해상보험 (이하 “귀사” 라 한다)으로부터 위탁 또는 제공받은 아래 개인정보의 취급 목적을 달성 및 종료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고번호	당사 사고 번호
위탁 및 제공 목적	손해사정업무
파기대상 고객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일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입일로부터 수입종결(수수료 지급完) 까지
파기 건수	00건
파기 일자	0월0일~0월0일
제공정보 이용부서/담당자	

1. 귀사로부터 위탁 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 금융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통화내역, IP주소 등 단독 또는 결합에 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의 취급 목적을 달성 및 종료함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추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하였습니다.

- 종이에 출력 또는 기록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 전자적 장치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 (DB 및 DB 백업, 개인정보취급자 PC 내 보관 파일 등 포함)

2. 귀사로부터 위탁 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 누설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당사는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였으며 이후의 관리 의무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귀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손해사정 도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귀중